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제정 | 2013. 5. 3 | 조례 제1918호 |
| 일부개정 | 2015. 7. 31 | 조례 제2091호 |
| 일부개정 | 2018. 2. 27 | 조례 제2341호 |
| 일부개정 | 2020. 3. 25 | 조례 제2584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
| 일부개정 | 2024. 11. 12 | 조례 제3181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1>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3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명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광명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2024. 11. 12>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청사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7>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2>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경도인지장애자 등록·관리 및 상담
7.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8. 경도인지장애자 발굴
9.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2. 27]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3. 25>

제10조(홍보위원 위촉)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홍보기관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31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7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2 조례 제3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